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4월 30일, 최보윤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5년 5월 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6.23.)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2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2026.4.29.) 상정, 축조심사, 의결  
(수정가결)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5.12.)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수정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최보운 의원)

현행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서는 비상임심판관에 대하여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해촉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비상임심판관의 해촉사유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비상임심판관의 구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신장애”를 비상임심판관의 해촉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4항).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최선영)

개정안과 같이 심판원 비상임심판관 해촉 사유를 변경하면, 장애인을 비상임심판관의 구성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제거할 수 있어, 필요한 입법조치로 생각됨.

다만, 개정안은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을 요건으로 하여 객관성을 담보하려는 취지로 생각되지만, 직무수행이 곤란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 없이는 해임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개정안에 대하여 관계부처의 입장을 보면, 해양수산부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로 의견을 제시하여 의사의 진단이나 소견 여부를 요건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조경태)

「특별감찰관법」 등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여 해촉 사유를 수정하

여 수정의결함.

## 6. 찬반토론 요지

없 음

## 7. 수정안의 요지

현행법에는 포함되지 않던 “사고”라는 요건이 해촉 사유에 추가될 경우 현행에 비해 해촉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거나 해촉 사유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점,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을 발급 받으려면 환자 본인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대한 신청이 필요하므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없어 해촉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특별감찰관법」 등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여 해촉 사유를 수정함(안 제14조 제4항제1호).

## 8. 심사결과

수정가결

## 9. 부대의견

없음

## 10. 소수의견 요지

없음

## 11.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내용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

[붙임] 1.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6. 5.

제 안 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현행법에는 포함되지 않던 “사고”라는 요건이 해측 사유에 추가될 경우 현행에 비해 해측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거나 해측 사유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점,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을 발급 받으려면 환자 본인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대한 신청이 필요하므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없어 해측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특별감찰관법」 등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여 해측 사유를 수정함(안 제14조 제4항제1호).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4조제4항제1호 중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을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으로,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을 “질환이 있다고 인정되는”으로 한다.

## 수정안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수정안                                                                                                                                                                                   |
|-----------------------------------------------------------------------------------------------------------------------------------------------------------------------|----------------------------------------------------------------------------------------------------------------------------------------------------------------------------------------------------------------|---------------------------------------------------------------------------------------------------------------------------------------------------------------------------------------|
| 제14조(비상임심판관)<br>① ~ ③ (생략)<br><br>④ 각급 심판원장은 비상임심판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상임심판관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심판원장은 중앙심판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br>1. <u>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u> | 제14조(비상임심판관)<br>① ~ ③ (현행과 같음)<br>④ -----<br>-----<br>-----<br>-----<br>-----<br>-----<br>-----<br>-----<br>-----<br>-----<br>-----<br>1. <u>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u> | 제14조(비상임심판관)<br>① ~ ③ (개정안과 같음)<br>④ -----<br>-----<br>-----<br>-----<br>-----<br>-----<br>-----<br>-----<br>-----<br>-----<br>-----<br>1. <u>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질환이 있다고 인정되는-----</u> |
| 2. ~ 6. (생략)                                                                                                                                                          | 2. ~ 6. (현행과 같음)                                                                                                                                                                                               | 2. ~ 6. (개정안과 같음)                                                                                                                                                                     |

|         |            |             |
|---------|------------|-------------|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⑤ (개정안과 같음) |
|---------|------------|-------------|

법률 제 호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제1호 중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을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이 있다고 인정되는”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br>행                                                                                         | 개<br>정<br>안                                            |
|------------------------------------------------------------------------------------------------|--------------------------------------------------------|
| 제14조(비상임심판관) ① ~ ③<br>(생략)                                                                     | 제14조(비상임심판관) ① ~ ③<br>(현행과 같음)                         |
| ④ 각급 심판원장은 비상임심판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상임심판관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심판원장은 중앙심판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br>-----<br>-----<br>-----.<br>-----<br>-----. |
| 1. <u>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u>                                                              | 1. <u>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이 있다고 인정되는-----</u>      |
| 2. ~ 6. (생략)                                                                                   | 2. ~ 6. (현행과 같음)                                       |
| ⑤ (생략)                                                                                         | ⑤ (현행과 같음)                                             |